

#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부설정보영재교육원 운영규정

(2012.09.18., 2014.07.04., 2014.10.27., 2015.03.12., 2015.10.29., 2016.03.11.,  
2017.10.12. 일부개정)

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부설정보영재교육원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 :**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의 명칭은 ‘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부설정보영재교육원(이하 ’정보영재교육원‘이라 한다)’이라 한다.  
<개정 2015.03.12.>

**제2조 (목적) :** 정보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(법률 제14839호. 2017.07.26.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8211호. 2017.07.26.)과 전라북도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고급인적자원의 조기 발굴·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능력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

**제3조 (위치 및 원장) :** 정보영재교육원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내에 두며, 정보영재 교육원의 장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(이하 ’교육연구정보원장‘이라 한다.)이 겸임한다. 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

**제4조 (영재학급의 설치 및 운영 근거) <삭제 2015.03.12.>**

**제5조 (입학자격)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SW(정보) 부문에 특기나 잠재력이 있는 초·중학생으로서, 소정의 판별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. <개정 2015.10.29.><개정 2017.10.12.>**

**제6조 (교육내용 및 교과용 도서)**

- ① 정보영재교육의 내용은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한다.<개정 2017.10.12.>
- ② 정보영재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·검정·인정과 발행, 공급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한다.<개정 2017.10.12.>

## 제2장 정보영재운영위원회 구성

### 제7조 (정보영재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)

- ① 정보영재운영위원회('정보영재선정심사위원회'를 겸임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15.03.12.>
  - 가.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의 교육전문직 및 정보영재교육원에서 정보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<개정 2015.03.12.>
  - 나. 정보영재 교육전문가
  - 다. 정보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
  - 라. <삭제 2015.03.12.>
  - 마. 그밖에 정보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정보영재교육업무를 담당한 교육전문직이 맡는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'제7조 ①항의 가'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5.03.12.>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03.12.>

### 제8조 (정보영재운영위원회의 기능) 정보영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정보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정보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10.29.>
- ③ 정보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이수와 인정 및 수료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10.29.>
- ④ <삭제 2015.10.29.>
- ⑤ 그 외의 정보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<개정 2015.10.29.>

- ⑥ 다만, 정보영재교육원 강사는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

**제9조 (운영세칙)**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5.10.29.><개정 2017.10.12.>

###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
#### 제10조 (학급편제)

- ① 정보영재교육원 학급 편제는 초등 3,4,5,6학년 3학급과 중1,2,3학년 2학급을 무학년제로 편성하여 교육한다. <개정 2016.03.11.><개정 2017.10.12.>  
② <삭제 2015.10.29.>

**제11조 (학생정원)** 정보영재교육원의 학급 정원은 2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4장 정보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

#### 제12조 (지원 자격)

- ① 당해년도 전라북도 초등학교 2·3·4·5·6학년과 중학교 1·2학년 재학생으로서 교사관찰추천서를 학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,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. 선정에 대한 자세한 기준 및 방법은 당해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에 준한다. <개정 2015.10.29.><개정 2017.10.12.>

#### 제13조 (대상자 선정)

- ① 제12조에 의하여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판별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 ②항과 제12조 ①항 및 ②항에 준하여 정보영재교육에 적합한 자를 정보영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자로 결정하고, 이를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에게 추천한다. 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영재운영위원회(‘정보영재선정심사위원회’)를 겸임한다.) 심사를 거쳐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정보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하고,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.  
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  
③ 전출, 자퇴, 제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, 총 이수시간 중 80% 이상의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 순으로 보충할 수 있다. <개정

2014.07.04.> <이동 (14조 13항에서) 2014.10.27.> <개정 2015.03.12.>

**제14조 (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절차) <삭제 2014.10.27.>**

**제15조 (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)**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은 정보영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보영재교육대상자로 추천된 학생 중 정보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보영재교육원에 편제된 정보영재학급에 배치한다.  
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

**제16조 (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)** 정보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.

## **제5장 수업연한 및 운영방법**

**제17조 (수업연한)** 정보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.

**제18조 (학기)** 정보영재교육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까지,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19조 (교과 및 교육과정)** 정보영재교육원의 교과는 SW(정보)과목으로 하며, 기본과목 10%~20%, 전공과목60~80%, 기타 활동 10~20%로 구분하여 운영하되,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고, 구체적 내용은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10.27.><개정 2017.10.12.>

**제20조 (수업시수)** 정보영재교육원의 연간 수업시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16.03.11.><개정 2017.10.12.>

**제21조 (수업 운영 방법)**

- ① 수업 운영 방법은 기본교과와 전문교과, 학기 중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, 사이버 학습교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4.10.27.>
- ② <삭제 2014.10.27.>
- ③ <삭제 2014.10.27.>
- ④ <삭제 2014.10.27.>
- ⑤ 구체적인 교육과정 내용이나 운영 방법은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10.12.>

⑥ 전북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이동 개정 2014.10.27.>

## 제6장 평가 및 수료

### 제22조 (평가 및 결과 처리)

- ① 정보영재교육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년별 과목별로 자율연구 산출물, 수행평가, 출석평가 등을 실시한다.<개정 2014.07.04.><개정 2017.10.12.>
- ②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관리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.<개정 2015.03.12.>
- ③ 평가결과는 익년의 정보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03.12.>

### 제23조 (수료)

- ①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은 학생이 정보영재 교육과정의 최종 과정을 마치고 평가결과가 목표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보영재교육원의 수료를 인정한다. <개정 2017.10.12.>
- ② 정보영재교육원 수료에 필요한 출석시수는 총 수업시수의 80% 이상이어야 한다. (단, 공결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소속 학교장의 공결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)<개정 2014.07.04.><개정 2017.10.12.>
- ③ 산출물 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성취도가 60점 미만인 학생은 수료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.<개정 2014.07.04.> <개정 2014.10.27.>

## 제7장 입학선정 관련비용 및 운영 경비<개정 2014.10.27.>

제24조 (입학선정관련비용) 정보영재교육원 입학 선정과 관련된 비용은 정보영재교육원이 소속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자체예산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예산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

### 제25조 (운영경비)

- ① <삭제 2017.10.12.>
- ② <삭제 2017.10.12.>
- ③ 정보영재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정보영재교육원이 소속된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자체예산,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원예산으로 한다.<개정

2015.10.29.><개정 2017.10.12.>

제26조 (학부모회) <삭제 2014.10.27.>

제27조 (연계기관) 전북소재 타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## 제8장 상별, 퇴학 및 운영규정 개정<개정 2015.03.12.>

제28조 (표창)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.  
<개정 2014.07.04.><개정 2017.10.12.>

- ① 학급별 이수시수의 90% 이상 출석하고, 학습 산출물이 우수하여 강사들의 추천을 받은 자<개정 2014.07.04.>
- ② 정보영재교육 운영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자<개정 2014.07.04.>

제29조 (제적)<개정 2014.07.04.>

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적처분 할 수 있다.  
<개정 2017.10.12.>

- ① 정보영재 학생으로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질병, 전학 등 교육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자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결석한 자
- ④ 스스로 퇴원하고자 그 사유서를 제출한 자<개정 2017.10.12.>
- ⑤ 제①항의 경우는 정보영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30조 (운영규정 개정)

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보영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영재교육원의 장이 개정한다. <개정 2015.03.12.><개정 2017.10.12.>

- ① 삭제 <개정 2014.07.04.>
- ② 삭제 <개정 2014.07.04.>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운영규정은 전라북도교육감의 영재교육원 인가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세칙) 본 운영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정보영재교육원장이 정한다.

**제3조 (경과조치)** 정보영재교육원의 정보교과의 시행 초기에는 담당교원의 확보정도,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

**제4조 (운영규정개정)** 2009. 03. 01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

**제5조 (운영규정개정)** 2009. 11. 04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

**제6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0. 10. 29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

**제7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1. 10. 25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

**제8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2. 09. 21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

**제9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4. 07. 04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 <추가  
2014.07.04.>

**제10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4. 10. 27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 <추가  
2014.10.27.>

**제11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5. 03. 12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 <추가  
2015.03.12.>

**제12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5. 10. 29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 <추가  
2015.10.29.>

**제13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6. 03. 11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 <개정  
2016.03.11.>

**제14조 (운영규정개정)** 2017. 10. 12.자로 개정하여 승인 즉시 시행한다. <개정  
2017.10.12.>